

초빙연구원 위촉 내규

제 정 일 : 2018. 12. 17.

제 1 조 (목적) 이 지침은 한국외국어대학교(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) 초빙연구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정의) ‘초빙연구원’이라 함은 본 대학교의 부속연구기관 또는 부설연구기관의 연구사업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일정기간 동안 무보수로 위촉된 비상근 위촉직 연구원을 말한다.

제 3 조 (적용범위) 초빙연구원에 대하여 외부지원기관에서 따로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.

제 4 조 (자격) 초빙연구원의 위촉자격은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연구소의 연구분야 관련 전공자를 원칙으로 한다.

제 5 조 (위촉절차) ① 초빙연구원의 위촉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해당 연구소장의 추천을 받아 연구지원팀장의 제청으로 연구산학협력단장이 위촉한다

제 6 조 (위촉구비서류) 위촉후보자는 다음의 서류를 발령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이력서
2. 최종학교 졸업증명서
3. 학위증 사본
4. 기타 필요로 하는 서류

제 7 조 (위촉기간) 초빙연구원의 위촉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, 재위촉할 수 있다.

제 8 조 (보수) 초빙연구원의 보수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.

제 9 조 (혜택) ① 본교 도서관 이용

② 연구원 증명서 발급

제 10 조 (면직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임면권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.

1. 본 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학칙 및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
2. 초빙연구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
3. 신병상의 이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초빙연구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지침은 2018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하되,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집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.